

대학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규정

제 정 2001. 3.
개 정 2011. 5.
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학교법인 우송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한다.) 정관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법인 산하 대학(교)에 재직중인 전임교원, 일반직, 기술직 및 기능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2장 명예퇴직 대상 및 절차

제3조 (명예퇴직대상) ①명예퇴직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.

② 법인 이사장(이하 이사장이라 한다)은 교직원의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명예퇴직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
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3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
4. 휴직중인 자
5.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4조 (명예퇴직 시기) 명예퇴직의 시기는 별표3과 같이 하되,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 (명예퇴직 공고) 총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초 명예퇴직대상 및 인원, 명예퇴직 신청기간, 수당지급방법, 수당지급일 등 명예퇴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직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명예퇴직신청) ①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대학 교직원 명예퇴직 신청서(별첨서식 제1호)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총장은 제1항에 의하여 명예퇴직이 신청되었을 시는 제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
제 3장 명예퇴직 결정

제7조 (명예퇴직의 결정) ①이사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명예퇴직신청을 제청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상위직 교직원
2. 장기근속 교직원

제8조 (지급대상자 통지) ①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자를 통보받은 총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4장 수당지급

제9조 (수당지급 및 산출 기준액) ①명예퇴직자로 결정된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.

②수당의 지급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원은 <별표 1>, 직원은 <별표 2>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때, 월봉급이라 함은 퇴직당시 봉급표상의 월기본급여를 말한다.

제10조 (수당의 지급시기 및 수령권자) ①수당은 퇴직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②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 (규정 외 사항 처리)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 × 정년잔여월수
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 × {60개월+(정년잔여월수-60개월)/2}
10년 초과인 자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1)월봉급액 산정 방법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을 적용한다.

2)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,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

<별표 2>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

직 급	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4급~5급 7급~9급 기능직	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 × 정년잔여월수
	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× {60개월+(정년잔여월수-60개월)/2}
	10년 초과인 자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6급	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 × (정년잔여월수+24개월)
	3년 초과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 × 정년잔여월수
	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0% × {60개월+(정년잔여월수-60개월)/2}
	10년 초과인 자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)

1)월봉급액 산정 방법

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을 적용한다.

2)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,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

<별표 3>

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

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	명예퇴직예정일
1. 1 ~ 1. 15	2. 28
3. 1 ~ 3. 15	4. 30
5. 1 ~ 5. 15	6. 30
7. 1 ~ 7. 15	8. 31
9. 1 ~ 9. 15	10. 31
11. 1 ~ 11. 15	12. 31

비고 : 1. 2월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.

2. 해당 대학 교직원은 대학 교직원 명예퇴직신청서(서식 제1호)를 자필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